현금 IC 카드 이용약관

제 1 조(목적)

이 약관은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현금IC 카드(이하 "카드"라 합니다)를 이용하는 고객(이하 "이용자"라 합니다)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'카드'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, 현금자동입출금기, 무인공과금수납기(이하 "자동화기기"라 합니다) 또는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(이하 "가맹점"이라 합니다)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은행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비밀번호를 신고하고 교부받은 IC(집적회로)칩이 내장된 카드를 말합니다.
- 2. '카드 출금비밀번호'라 함은 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신청하는 4자리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하며 계좌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3. 'PIN(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)'이라 함은 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신청하는 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하며 카드별로 하나의 PIN 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4. '카드 결제서비스'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5. '가맹점'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카드 결제서비스 업무를 취급하기로 약정한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.
- 6. '카드 결제인출서비스'라 함은 이용자가 제휴처에 물품(또는 서비스) 구매와 함께 현금 지급을 요청하면, 이용자는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물품(또는 서비스) 구매대금을 제휴처에 지급하고, 제휴처는 이용자에게 현금지급 요청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7. '제휴처'라 함은 참가은행 등이 카드 결제인출서비스를 위탁한 가맹점을 말합니다.
- 8. '가맹점 잔돈적립서비스'라 함은 잔돈적립 가맹점에서 이용자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물품 구매대금 결제 후 발생한 잔돈을 현금카드에 연계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 3 조(카드의 발급)

- ① 카드발급(재발급 포함) 신청시에는 은행이 정한 "은행거래신청서", "현금IC 카드 발급 신청서"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은 본인확인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며 이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합니다.
- ② 카드 1 매당 최대 10 계좌까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용자가 예금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제 4조(비밀번호)

카드출금시 이용할, 카드 출금비밀번호와 PIN 온 온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5조(카드의 이용)

- ① 이용자는 카드로 은행 본지점, CD 공동망 참가은행(이하 "참가은행"이라 합니다)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출없이 입금, 출금, 잔액조회, 계좌이체 등 기타 은행이 정하는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는 카드로 제휴처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인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잔돈적립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로 잔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은 카드 거래시 계좌번호, 비밀번호(PIN 포함)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의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합니다. 다만, 카드에 계좌가 1개만 수록된 경우에는 PIN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소액거래(5만원 이하 거래)에 대하여 본인 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는 카드의 출금비밀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④ 이용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⑤ 가맹점에서 카드이용 후 이용대금이 이용자의 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서 자동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이용자가 반품,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.
- ⑥ 가맹점에서 거래취소시 부득이한 여건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.
- ⑦ 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혼잡 등 창구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 본지점 창구에 카드를 제시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.

제 6 조(거래명세)

- ① 은행 및 참가은행은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거래 시마다 거래명세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거래금액과 잔액 등을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며 이용자는 제공되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이용금액 등 거래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, 인출 또는 잔돈적립 거래 시 은행은 이용명세를 이용자의 예금계좌 통장에 기장해 줌으로써 이용명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(이용한도 및 이용시간)

- ① 카드의 1 회 및 1 일 이용금액의 한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이용한도는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.
- ②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및 가맹점 이용시간은 은행 및 참가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.
- ③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이용한 인출 또는 잔돈적립 가맹점에서 잔돈적립 거래에 대한 이용한도와 이용시간은 이용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별도 장소에 게시합니다.
-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,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이체실적이 없는 고객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합니다.
- ⑤ 제 1항에도 불구하고,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합니다.

- ⑥ 제 4,5 항에 의해 이체·인출한도가 하향 조정된 이용자 본인이 별도 요청 시까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및 1회 이체·인출한도가 70만원으로 유지됩니다.
- ⑦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·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·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와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해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제 8 조(분실, 도난 등의 신고)

- ① 이용자는 카드의 분실, 도난, 멸실, 훼손, 비밀번호(PIN 포함) 누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은행의 본지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효력이 생기며,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에 의해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합니다.
- ③ 제 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9 조(재발급)

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카드의 분실, 도난, 멸실,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제 3 조의 절차에 의하여 재발급합니다.

제 10 조(사용중지)

- ① 이용자가 일자에 관계없이 카드 출금비밀번호를 누적하여 3회 오류 입력시 또는 PIN을 누적하여 5회이상 오류 입력시에 은행은 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 1 항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된 경우 해제를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 출금비밀번호, PIN을 변경 하여야 합니다.
- ③ 자동화기기의 고장, 정전, 온라인 장애 및 사고발생시 은행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④ 온라인 마감,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시 및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⑤ 카드의 비밀번호 오류입력 횟수 초과, 잔액증명서 발급, 지급제한, 사고신고 접수, 예치한도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
- ⑥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은행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(수수료)

- ① 카드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이용자는 발급매수당 2,000 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② 카드를 이용한 거래시 거래에 상용하는 수수료를 은행 및 참가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, 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합니다. 다만, 제휴처 결제단말기를 통한 인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장소에 게시합니다.

제 12 조(손해배상 및 면책)

① 은행은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-약관-제 018 호(2021.02.25)

- ② 은행은 소액거래(5 만원 이하 거래)에 대하여 카드 출금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가 슝인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.
- - 1. 이용자가 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 - 2. 제 3 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출금비밀번호나 PIN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- ④ 이용자로부터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 3 자가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.

제 13조(카드의 반납)

카드의 해지 시에는 이용자는 은행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단, 여러 계좌가 수록된 카드에서 한 개의 계좌만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 14 조(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)

카드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 15 조(약관의 변경)

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29 조(약관의 변경)을 준용한다.

제 16 조(준용규정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각 예금종류별 약관 및 약정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법, 참가은행간 CD 공동이용업무규약,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17 조(관할법원)

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-부 칙-

(시행일) 이 약관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